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두641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28. 선고 2021누4087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상 비거주자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7.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소외 2와 자녀인 원고가 있었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국내 예금채권 744,974원(이하 '이 사건 국내재산'이라 한다) 및 미합중국에 소재한 주택 1채가 있었다. 원고는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국내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으로 하고, 망인이 2016년 경 상속인이 아닌 자들에게 증여한 광명시 소재 2필지 토지 등 합계 1,427,051,000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여, 2018. 12. 5. 원고와 소외 2에게 상속세 237,029,0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각각 고지하였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법 제3조는,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를 구분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 제13조는,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1호)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2호)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위 제1, 2호의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를 구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 제3조의2는,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기초로 산출한 상속세 총액에 대하여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부의무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구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상속분으로 나누어야 비로소 확정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221 판결 참조).

나. 위에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구 상속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국내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속세법 제3조 및 제3조의2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임상필

주 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이숙연